제네바, 모리셔스 및 두바이와의 비교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제네바와 인도

스위스와 인도의 관계는 직접투자보다 자산관리에 의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인도 거주자가 보유한 스위스 은행 계좌는 해외 미신고 재산을 둘러싼 인도 내 논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싱가포르는 이 논쟁에서 부차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제네바에 관한 자매 도서 제E편이 스위스 전반에 대해 설명하듯이, 스위스와 인도가 시행하는 정보 자동교환이 도입된 이후 이 문제는 상당 부분 그 날카로움을 잃었습니다.[1] 그사이 경제 관계는 무역과 투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2024년 3월 10일 뉴델리에서 서명된 인도와 EFTA 국가 간의 무역경제동반자협정(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는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5년간 인도에 1,000억 미국달러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EFTA 국가들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협정은 2025년 10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2]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스위스와 인도 간의 조세조약도 싱가포르가 잘 아는 어려움을 보여 줍니다. 2023년 인도 대법원이 인도 조약상의 최혜국대우 조항은 별도의 고시 없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후, 스위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인도와의 조약에서 그 조항의 적용을 중단했습니다.[3] 따라서 제네바와 싱가포르는 같은 상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을 환영하면서도 조약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해석을 고수하는, 크고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차이는 기능에 있습니다. 제네바는 멀리서 인도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고 인도의 원자재를 거래합니다. 싱가포르는 인도로 유입되는 자본의 직접적인 경로 위에 서 있습니다.

모리셔스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은 모리셔스입니다. 모리셔스는 인도와의 조약 덕분에 20년 동안 인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했으나, 2016년 의정서로 신규 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면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조약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모리셔스 조약과 연계되어 있었으므로, 두 금융 중심지의 운명은 법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후 싱가포르는 조약 이상의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모리셔스를 앞질렀습니다. 깊이 있는 금융서비스 부문, 국제적 명성을 지닌 규제기관, 대규모 인도인 전문가 공동체, 그리고 인도를 넘어서는 지역 시장이 그것입니다. 제네바에 관한 자매 도서는 모리셔스가 아프리카 투자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얻을 교훈은 조약상의 이점은 일시적인 반면 금융 중심지로서의 자질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두바이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다른 부문에서 인도 비즈니스를 두고 싱가포르와 경쟁합니다. 걸프 지역의 인도 디아스포라는 규모가 크고, 뭄바이에서의 비행시간은 짧으며, 소득세가 없다는 점은 인도 기업가와 부유한 가문들을 끌어들입니다. IFSCA는 MAS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몇 달 후인 2020년 12월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바이의 강점은 무역, 부동산, 금,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그리고 인도 가문의 개인적 이주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강점은 기관 자본, 펀드 운용 및 인도 투자의 구조화에 있습니다. 제K편 제III장에서 이들 금융 중심지를 상세히 비교합니다.

숫자로 보기

최초의 인도-싱가포르 조세협정: 1981년 4월 20일. 현행 협정: 1994년 1월 24일 서명, 1994년 5월 27일 발효. 의정서: 2005년 6월 29일(2005년 8월 1일 발효), 2011년 6월 24일(2011년 9월 1일 발효), 2016년 12월 30일(2017년 2월 27일 발효, 양도차익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혜택제한의 지출 기준: 연간 20만 싱가포르 달러 또는 500만 루피. 싱가포르의 MLI 시행령 발효: 2019년 10월 1일. CECA: 2005년 6월 29일 서명. 2020년 인구조사 기준 싱가포르의 인도계 거주자: 362,274명(9.0%). 2000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인도에 대한 누적 지분형 FDI: 7,877억 2,000만 미국달러, 그중 싱가포르 24.72%, 모리셔스 23.71%. 2025–26년 싱가포르발 지분형 FDI: 198억 미국달러. 2025–26년 양자 교역액: 361억 미국달러. 테마섹의 인도 익스포저: 7%(2026년 3월 31일). SGX 니프티: 2000년 9월 25일 출범, 2023년 7월 3일 GIFT 니프티로 GIFT 시티 이전. IFSCA: 2020년 4월 27일 설립, 2020년 6월 17일 MAS와 양해각서 체결. 2025년 6월 30일 기준 GIFT 시티 펀드: 운용사 177개, 펀드 272개, 약정액 221억 1,000만 미국달러.

주

1. Ressos,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제E편 제III장, « La fin du secret bancaire à l'égard des autorités fiscales étrangères (2008-2018) ». ↩
2. EFTA, "India"(efta.int,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EPA는 2024년 3월 10일 서명, 2025년 10월 1일부터 발효(2025년 10월 1일 공동성명); Wikipedia, "India–EFTA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4년 3월 10일 뉴델리에서 서명; EFTA 국가들은 약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5년간 인도에 1,000억 미국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3. 인도 대법원, *Assessing Officer v Nestlé SA*, 2023년 10월 19일 판결; 2025년 1월 1일부터 스위스-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의정서의 최혜국대우 조항 적용을 중단하는 것에 관한 스위스 연방재무부의 2024년 12월 통지.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